

인권위원회 규정

(제정 2018. 2. 25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인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과 본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교원(비전임교원, 연구원, 조교 포함), 직원(임시직 포함), 학생(휴학생, 교환학생 포함)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(2차 가해 포함)로서 관련된 경우 및 외부인이 피신고인,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권침해 등이란 성폭력·성희롱을 제외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및 「형법」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말한다.
2.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.
3.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.
4.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.
5.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.
6. 당사자란 피해자, 가해자,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을 말한다.

제4조(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) ① 사건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,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,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.

- ② 신고인 또는 조사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고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- ③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.
- ③ 교무처장, 총무처장, 카운슬링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학생지원실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심의한다.

1. 인권침해 등에 대한 예방교육
2. 당사자에 의한 인권침해 등의 피해신고 접수
3.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
4. 인권침해 등 관련 민원의 고충처리, 상담 및 중재
5. 그 밖에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사항

제7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